

인천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239877, 2020가단268110(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운, 김가해

피고A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4. 21.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12.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810호의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725,21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725,219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3. 6. 5.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97,750,000원, 보증기간을 2013. 6. 5.~2014. 6. 4.(이후 2020. 5. 29.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해주었다.
- 2) B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았다.
-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B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때 B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제6조). 또한 원고가 B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B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0. 1. 13.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에게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았다.
- 2) 원고는 2020. 3. 3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94,135,67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은 1,387원이다.
- 3)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39465)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3. "B는 원고에게 94,137,058원(94,135,671원 + 1,387원) 및 그중 94,135,671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24,9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20. 4. 26.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를 대리한 F와 B는 2019.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9년 제81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8. 10. 31. 50,000,000원을 채무자(B)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00,000원을 2019. 12. 18.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 피고는 2019. 12. 20.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50,032,200원(대여금 50,000,000원 + 집행비용 32,200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이하 'G')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24269)을 신청하였고, 2019. 12. 31. B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32,2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배당표 작성 등

1) G은 B에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공탁(인천지방법원 2020금2014)하였고, 그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D)에서 2020. 6. 24. G에 288,600원, 피고에게 44,725,21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20. 6. 24.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2020. 6. 26. 이 사건 본소(2020가단239877)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그에 앞선 2020. 6. 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248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이송(2020가단268110)되어 이 사건 본소에 병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는 2020. 1. 13. 무렵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 따라 B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위 사전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가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9. 12. 11.로부터 약 1달 후인 2020. 1.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및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9. 12. 11. 당시 B의 적극재산은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 I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 109,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 715,000,000원, J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 5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기존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당시 변제기를 7일 후로 정하였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9일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결국 G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피고가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의 B가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는 B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K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B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가 B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11. 23. 25,000,000원, 2017. 12. 4. 2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한 사실, K가 2018. 10. 31. 피고에게 영업이익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B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위 계약서에는 "추후 임대차기간 만료 시 B는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토록 한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갱신될 때에는 B는 피고에게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변제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B는 2013. 3. 12. 인천 남동구 M롯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K는 2014. 1. 28. 같은 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두 회사는 모두 유리 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② K는 2016. 1. 11. 인천 남동구 N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B 역시 2016. 1. 25. 같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그 후 B는 2018. 1. 19. 인천 남동구 O로, K는 2019. 7. 10. 인천 남동구 P, Q동 1층으로 각각 본점을 이전하였다.

③ 이렇듯 K는 설립 초기부터 4년 이상 B와 같은 공장을 사용하였고 유사 업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K의 전 대표이사로서 B의 운영 상황이나 재산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B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K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할 만큼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B는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피고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변제기를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 시로 유예하는 대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 후를 변제기로 정하였고, 변제기로부터 2일 후인 2019. 12. 20.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는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다른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로 인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면 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725,219원은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4,725,21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봉지수